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월간 뉴스레터

2015년 11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2015 회계감독분야 설문조사 결과(금융감독원, 2015.11.24)
- 핵심감사제 제정방향(한울 Newsletter 10월호 참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 기준서 개정(금융감독원, 2015.11.18)

세무정보

- 지방세 3법 개정안 정부 확정 내용 알아보기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 06179)

QRM 본부
02 - 2009 - 5718
회계소식 등
2015 회계감독분야 설문조사 결과(금융감독원, 2015.11.24)
개요
■ 개요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제도·운영의 적절성 평가 및 제도개선 분야 발굴 등을 위하여 매년 설문조사 실시함.

(설문대상) 현장에서 회계업무를 직접 수행·관리하는 상장기업 CEO·CFO 등의 경영진 (1,840명),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9,133명), 회계학계 교수(1,639명) 등 총 12,612명.

◦ 총 932명이 회신하여 전체 응답률은 7.4%이며, 기업 CEO 등 658명(응답률 35.8%), 공인회계사 212명(응답률 2.3%), 학계 62명(응답률 3.8%)임

(설문내용) 회계투명성 수준,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구성(7점 척도로 평가)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결과

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하여 전년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3.91점 →4.22점). 기업(4.93점), 학계(4.29점)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회계사(3.43점)는 보통 이하로 평가하여 시각차를 보임

나.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및 전문성 등

(적정성) 상장기업(4.24점→4.63점) 및 비상장기업(3.33점→3.66점)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

(전문성 등) 외부감사인의 전문성·독립성의 경우 회계사와 학계에서는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기업은 거의 변화 없음

◦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있어서 회계사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학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평가

다. 회계감독·제재의 실효성 및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관련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 회계감독·제재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4.25점→4.60점)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4.94점→5.36점)

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 및 직접작성책임 강화방안 관련

(재무제표 직접작성수준) 전반적으로 작성수준은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4.05점→4.34점)하고 있으나, 기업은 높게 평가(5.02점)한 반면, 회계사는 낮게 평가(3.16점→3.88점)하여 시각차를 보임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방안*)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방안 제도의 시행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4.09점→4.46점)

* 감사 前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시 증선위에도 동시제출 의무화,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행위 금지 등('14.7 시행)

마. 재무제표 공시시한의 적정성

재무제표의 공시시한에 대해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상당히 증가하여 보통(4점) 수준에 근접(3.60점→3.99점)

바.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사항 구체화

기업, 학계는 제도도입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각각 4.20점, 5.13점)한 반면, 회계사는 부정적으로 평가(3.44점)

사. 과징금 한도 상향조정 필요성 관련

학계는 과징금 한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공감(5.39점)한 반면, 실제 제재를 받는 기업, 회계사는 보통으로 평가(각각 4.05점, 4.00점)

시사점

■ 시사점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는 전년대비 상당히 개선되어 보통 이상의 수준을 회복(3.91점→4.22점)
- 한편,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업 등과 뚜렷한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음

- 감사보수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은 충분하다고 평가한 반면 회계사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에 대해서도 기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부정적으로 평가
- 다만,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업과 회계사 모두 공감하나 회계사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핵심감사제 제정방향(한울 Newsletter 10월호 참조)
개요
■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015년 10월 28일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핵심감사(KAM)**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핵심감사제도의 제정 방향에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임.

핵심감사제 적용 대상 기업
■ 핵심감사제 적용대상 기업

수주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투입법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매출액이 있고,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 중 사업보고서제출대상 회사

(*)수주산업에 속하는 기업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라 건설업(산업분류코드 F), 엔지니어링업(산업분류코드 M721XX), 조선업(산업분류코드 C31XXX), 터빈제조업(산업분류코드 C2911X)이 주요 업종인 기업

유의적 위험 예시
■ 유의적 위험 예시

-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 미청구공사금액의 규모와 변동
-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동내용과 공사수익, 미청구공사 등에 미치는 영향
-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 공사손실충당금의 평가와 회계처리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추정의 불확실성
- 계약수익 기인식금액의 회수가능성

핵심감사항목 선
■ 핵심감사항목 선정시 고려사항

- 정시 고려사항**
- (1) 주요 공사의 총예정원가의 변동이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 (2) 미청구공사금액의 유의적인 증가
 - (3) 중요 공사의 납기 지연
 - (4) 기타 수주산업 수익인식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거시지표의 변동(예, 유가, 환율 등의 변동)

- 분반기 검토에서의 적용**
- **분반기 검토에서의 적용**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분석적 검토와 질문을 수행하고, 분·반기별 수행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기타의 검토절차를 수행

- 감사보고서 보고 방식**
- **감사보고서 보고방식**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을 강조사항문단 위치에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이라는 제목과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을 기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 기준서 개정(금융감독원, 2015.11.18)

- 개요**
-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5. 11. 18.(수)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4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확정하였음.

안건	개정된 K-IFRS	시행시기
1	제1016호(유형자산), 제1041호(농림어업)	'16.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조기 적용 가능)
2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3	K-IFRS 2012~2014 연차개선: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4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가. '생산용 식물'의 회계처리에 적용하는 기준서 변경(제1041호→제1016호)
 성숙한 생산용 식물(Bearer Plants)*은 더 이상 유의적인 생물적 변환이 되지 않는다, 거래시장이 없어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형자산 범주로

변경. 성숙전 생산용 식물은 자가 건설 유형자산처럼 원가 누계액(accumulated cost)으로, 성숙한 생산용 식물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나. 재무제표의 표시 및 주석 공시 관련 규정 명확화(제1001호)

(1) 중요성과 통합표시

K- IFRS에서 요구하더라도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2) 중간합계

중간합계 구성항목은 K- IFRS에 따라 측정되어야 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명명(label)하며,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K- IFRS가 요구하는 중간합계나 합계보다 더 부각되지 않도록 함.

(3) 주석공시 방법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석의 기재방법과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함.

(4) 지분법적용자산의 기타포괄손익

관계·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성격별로 분류하지 않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①재분류되는 항목과 ②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분.

[개정 후 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의 공시 예시]

	(단위: 천원)	
	20X6년	20X5년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자산재평가차익(차손)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	(7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166)	(1,000)
	500	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500	3,000
총포괄이익	121,750	68,500

* 관계기업 등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성격별로(예를 들면 자산재평가차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등으로) 따로 분류하여 표시할 필요 없음

다. K- IFRS 2012~ 2014 연차개선(Annual improvements)

- (1) 매각 예정 분류와 분배 예정 분류 간 상호 대체 시 회계처리방법(제1105호)
기존의 매각 계획이나 분배 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유지
- (2) 금융자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산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107호)
양도된 금융자산의 미래실적에 연계됨으로써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면,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여 공시 대상이 됨.
-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관련 모든 공시여부- 중간재무제표(제1107호)
기업은 K- IFRS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시 여부 판단
- (4) 퇴직급여채무 측정 할인율 결정(제1019호)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총이 두터운 시장이 있는지는 개별국가가 아닌 통화수준에서 평가
- (5) 중간재무보고를 할 때 기타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을 명확화(제1034호)
중간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는 방법은 물론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경영진 설명서, 위험보고서 등)에 공시도 인정. (기타정보 예: 영업활동의 계절적 특성 등)

라. 투자기업 관련 규정 개정(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기업의 연결예외 규정)

‘14년부터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회계처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

(*) 투자기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K- IFRS 1110.27)

- ①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하여
- ② 그 자금을 시세차익, 투자수익(예: 배당,이자,임대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이 사업목적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해야 하고
- ③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함.

- (1)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요건 개정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
- (2)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
 투자기업은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
- (3) 관계·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
 ‘투자기업’인 관계·공동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에 그 투자기업이 자신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지방세 3법 개정안 정부 확정 내용 알아보기

주요내용

○ 정부는 30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되고 납세자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과 더불어 지방세 감면·신설을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연말에 확정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① 지방세기본법

-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고,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납부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세수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 년으로 정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② 지방세법

-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던 점을 바로잡아 납세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경우 각 사업장이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분	개정안	해당 법조문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한 조세형평성의 제고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 퍼센트~3 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 퍼센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함.	제 11 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시 별도합산과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제 106 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제 60 조(신고 및 납부 등)

	<p>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청하도록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p>	<p>제 101 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p>
	<p>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p>	<p>제 103 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p>
	<p>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환급하도록 개선함.</p>	<p>제 103 조의 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신설)</p>
<p>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p>	<p>종전에는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 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함.</p>	<p>제 84 조의 4(면세점) 제 84 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p>
<p>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의 적용기한 연장</p>	<p>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p>	<p>법률 제 10221 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 1 조의 2</p>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구분	개정안	해당 법조문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신설 등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제 31 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제 32 조의 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신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제 57 조의 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제 8 항 신설)
201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 연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제 17 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 17 조의 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 18 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 20 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 21 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 22 조의 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 36 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제 19 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제 31 조의 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제 67 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 도입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방지하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상 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제 181 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제 6 항 신설)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